국가기록원 나라기록

지 번	물건의 종류	구 조 및 규 격	수량 또는 면적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 성 명	소유자 주 소
	주 택	블록스라브	20.01㎡	부엌현관	김 헌 규	동래구명륜동 696-23
	장독대	콘크리트	2개소 (8.17㎡)		〃	〃
	목욕실	블록스라브	5.13㎡	목욕실 및 창고	〃	〃
	담 장	블록 H=1.9m	L=12.5m		〃	〃
696-22	주 택	블록기와	21.93㎡	주 택	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노회경남노회유지재단	부산남구대연동 1752-2
	〃	블록스레트	41.65㎡	예배실 및 부엌	〃	〃
	창 고	〃	4.32㎡		〃	〃
	장독대	블 록	4.59㎡		〃	〃
	담 장	블 록 H=1.7m	L=2.0m		〃	〃
696-145	대 문	철제 H=2.0m, L=2.0m	1개소		조 쾌 문	동래구명륜동 696-145
	창 고	블록스레트	4.86㎡		〃	〃
	담 장	블록H=1.7m	L=5.3m		〃	〃
	〃	블록H=2.0m	L=13m		〃	〃
	수 목	유카회 2종	3본		〃	〃
676-13	주 택	블록스레트	52.15㎡	주 택	박 영 호	동래구명륜동 696-13
	점 포	〃	9.0㎡	점 포	〃	〃
	창 고	블록기와	1.44㎡		〃	〃
	간 추	선라이트	1.8㎡		〃	〃
	장독대	블록B=3.0m, L=2.0m	1개소		〃	〃
	담 장	블록H=2.0m	L=3.0m		〃	〃

◉부산직할시고시제117호

부산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, 같은법 제13조,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획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86년 4월 26일

부산직할시장

계획결정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조서

1. 안락동 지내 주차장,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

가. 주차장

구 분	번호	명 칭	위 치	면적(㎡)
신 설		노외주차장(충렬사주차장)	동래구 안락동 420-45번지 일원	1,568.50

나. 도 로

구 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기 정	소로	1	3	10	990	대2-8호선 (충렬로)	중 3-42호선	
변 경	〃	1	3	10	109	〃	안락동 422-20	
〃	〃	1	3-1	10	815	안락동420-43	중 3-42호선	연장단축분폐지 (L=66m) 및 소 1-3호선
기 정	〃	2	16	8	387	안락동 제척지	소 1-3호선	

본 출력물은 국가기록포털(http://contents.archives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법적증빙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국가기록원 나라기록

구 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변 경	소로	2	16	8	267	안락동 제척지	대 3-31호선(반송로)	연장단축분폐지 (L=120m)
기 정	〃	3	1	4	73	안락동420-53 (소2-16호선)	안락동420-53 (소 1-3호선)	
변 경	〃	3	1	4	47	안락동420-43 (소3-2호선)	안락동420-53 (소1-3-1호선)	연장단축분폐지 (L=26m)
신 설	〃	3	2	6	63	안락동420-40 (대3-31호선)	안락동420-43	

2. 온천동 지내 도로변경결정

구 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정	소로	2	30	8	220	온천동 1365 답 (소 1-18호선)	온천동 1775 도 (소 2-31호선)	
변 경	〃	2	30	8	220	〃	〃	선형불일치시정

3. 연산, 망미동지내 도로결정

구 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
신 설	소로	3	1	6	45	연산동 산159-23 (중 3-115호선)	연산동 1811-601	

○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 생략).
○도면은 부산직할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보관
○별첨 도면 표시구간외의 기정도로 계획선은 당초와 같으므로 도면은 생략함.

◉부산직할시고시제118호

부산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,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86년 4월26일

부산직할시장

○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2	23	15	1,713	부암동 346-21 (대 2-20호선)	당감동 514-1 (대 3-21호선)	
변경	〃	2	23	15	1,713	〃	〃	경미한위치변경

○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 생략).
○별첨 도면 표시구간 외는 당초와 같으므로 도면 생략함.
○도면은 부산직할시청(도시계획과) 및 관할구청에 보관

◉전라북도고시제62호

1977년 9월14일 전주도시계획 학교시설로 결정(전북고시 제255호)된 완산학원(중·고 여상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6년 4월26일

전라북도지사

1. 학교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시 설 명	위 치	면적(m²) 기 정	변 경	변경후	비 고
완산학원(중·고여상고)	평화동 1가 480부근	94,941	감 4,298	90,643	구역변경 없이 면적정정

본 출력물은 국가기록포털(http://contents.archives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법적증빙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